|  |  |  |
| --- | --- | --- |
|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재정부공고 2020년 제27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에 관한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 또는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법률, 법규에 부합되는 공익자선 사업에 사용한 기부 지출은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2. 본 공고 제1조에서 일컫는 공익자선 사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부법> 제3조 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3조 자선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본 공고 제1조에서 일컫는 공익성 사회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등기하고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자선조직, 기타 사회조직과 대중단체를 포함한다. 공익성 대중단체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및 관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기한 자선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및 관리는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4. 민정부처에 법에 의거하여 등기한 자선조직과 기타 사회조직(이하 ‘사회조직’이라 통칭)이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할 경우, 동시에 아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1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2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  4.2 매년 5월 31일 전까지 요구에 따라 등기관리기관에 회계감사를 거친 전연도 특별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재무 수지와 자산부채의 전반적인 상황, 기부금 모금과 기부금 수령 전개 황, 공익자선 사업 지출 및 관리비용 상황(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비율 상황) 등의 내용 포함한다.  최초로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확인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직전 2개 연도의 특별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공익자선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 전연도 총수입의 70% 보다 높아야 한다. 해당 지출 비율 계산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 수입으로 전연도 총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공익자선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 전연도 말 순자산의 8% 보다 높아야 한다. 해당 비율 계산 시, 직전 3개 연도 말 평균 순자산으로 전연도 말 순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  4.4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지출한 관리비용이 당해 총지출의 10% 보다 낮아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지출한 관리비용이 당해 총지출의 12% 보다 낮아야 한다.  4.5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구비하고, 또한 면세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6 직전 2개 연도에 등기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고 제외)  4.7 직전 2개 연도에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엄중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  4.8 사회조직 평가등급이 3A이상(3A 포함)이고, 또한 평가결과가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에도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공익자선 사업의 지출, 관리비용과 총수입의 기준과 범위는 <민정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선조직의 자선활동 전개에 따른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민발 [2016] 189호)에 따라 자선활동 지출, 관리비용과 전연도 총수입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거나 인정된 자선조직의 경우, 그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본 조 제1항, 제6항, 제7항 조건에만 부합되면 된다.  5.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의 확인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1 민정부에 등기된 사회조직의 경우, 민정부가 사회조직 공익활동 상황과 일상 감독관리, 평가 등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조직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초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민정부의 기초적 의견에 근거하여 재정부, 세무총국과 민정부는 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 명단을 공동으로 확정하여, 공고를 발표한다.  5.2 성급(省级)과 성급(省级) 이하의 민정부처에 등기된 사회조직의 경우, 성(省),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1]](#footnote-1)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3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5.3.1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이 당해 연말에 만기되는 공익성 사회조직  5.3.2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이 이미 취소되었으나 조건에 다시 부합된 사회조직  5.3.3 설립등기 후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회조직  5.4 매년 연말까지 성급(省级) 이상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권한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과 명단 발표 업무를 완료하고,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서로 다른 심사대상에 따라 각각 명단 및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개시일을 열거한다.  6.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은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본 공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1번째(5.3.1) 상황, 즉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은 명단 공고를 발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본 공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2번째(5.3.2)와 3번째(5.3.3) 상황일 경우,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은 명단 공고를 발표한 당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7. 공익성 사회조직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7.1 본 공고에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등기관리기관에 특별정보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7.2 최근 1개연도 공익자선 사업의 지출 용도가 본 공고 제4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3 최근 1개연도 동안 지출한 관리비용이 본 공고 제4조 제4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4 비영리 조직 면세자격 만료 후,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면세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7.5 등기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경고 제외)을 받은 경우  7.6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엄중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오른 경우  7.7 사회조직 평가등급이 3A 보다 낮거나 또는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8. 공익성 사회조직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하고, 또한 자격이 취소된 당해부터 이후 3개 연도 내에 자격을 새로이 확인해 주지 아니한다.  8.1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자에 대한 이익의 대가를 바라는 조건을 붙이거나 기부 명목으로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선기부를 이용하며 담배제품이나 또는 법적으로 홍보가 금지된 제품과 사항을 홍보하거나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기부를 받은 등의 상황  8.2 조직 정관을 위반하는 활동을 전개하거나 또는 받은 기부금을 조직 정관에 규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8.3 기부 재산의 용도와 수익자를 확정할 시 특정수익자를 지정하고, 또한 해당 수익자와 기부자 또는 공익성 사회조직 관리인원 간 명확한 이익관계가 존재할 경우  9. 공익성 사회조직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을 새로이 확인해 주지 아니한다.  9.1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종사한 경우  9.2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가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후원한 경우  10.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공익성 사회조직에 대해 성급(省级) 이상의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관련 정보를 조사한 후, 권한에 따라 즉시 사회에 자격 취소 명단 공고를 게재한다. 공고를 발표한 다음달부터 관련 공익성 사회조직은 더 이상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11.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및 부처 등 국가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을 시, 행정관리 등급에 따라 각각 재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처가 감독(발행)제작한 공익사업 기부영수증을 사용하고, 해당 단위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 기부 지출을 세전공제 할 경우,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12. 공익성 사회조직 등기설립 시의 자금을 등록한 기부자는 해당 공익성 조직이 최초로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당해연도에 소득세 연말정산 납부 진행 시, 규정에 따라 그 등록한 자금 기부액에 대한 세전공제를 진행할 수 있다.  13.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및 부처 등 국가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을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기부액을 확인한다.  13.1 접수한 화폐성 자산의 기부는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기부액을 확인한다.  13.2 접수한 비(非)화폐성 자산 기부는 공정가액 기준으로 기부액을 확인한다. 기부자가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에 기부할 경우, 비화폐성 자산 공정가액을 명시한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부를 받은 측은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없다.  14. 납세주체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성급(省级) 이상의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적시에 공식 홈페이지에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갖춘 공익성 사회조직 명단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은 앞서 말한 채널을 통해 사회조직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및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15.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 기부세전공제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8]160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유관문제에 관한 보충 통지>(재세[2010]4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에 대한 심사비준 관련 조정사항에 관한 통지>(재세[2015]141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2019년도 및 이전연도 사회조직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에 대한 확인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각 급(级)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기존 정책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20년도 및 이후연도의 공익성 세전공제 자격의 확인 및 관리는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  2020년 5월 13일 |  | **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  **事项的公告**  财政部公告2020年第27号  为贯彻落实《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现就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事项公告如下：  一、企业或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用于符合法律规定的公益慈善事业捐赠支出，准予按税法规定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二、本公告第一条所称公益慈善事业，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益事业捐赠法》第三条对公益事业范围的规定或者《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第三条对慈善活动范围的规定。  三、本公告第一条所称公益性社会组织，包括依法设立或登记并按规定条件和程序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慈善组织、其他社会组织和群众团体。公益性群众团体的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确认及管理按照现行规定执行。依法登记的慈善组织和其他社会组织的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确认及管理按本公告执行。  四、在民政部门依法登记的慈善组织和其他社会组织（以下统称社会组织），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应当同时符合以下规定：  （一）符合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五十二条第一项到第八项规定的条件。  （二）每年应当在3月31日前按要求向登记管理机关报送经审计的上年度专项信息报告。报告应当包括财务收支和资产负债总体情况、开展募捐和接受捐赠情况、公益慈善事业支出及管理费用情况（包括本条第三项、第四项规定的比例情况）等内容。  首次确认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应当报送经审计的前两个年度的专项信息报告。  （三）具有公开募捐资格的社会组织，前两年度每年用于公益慈善事业的支出占上年总收入的比例均不得低于70%。计算该支出比例时，可以用前三年收入平均数代替上年总收入。  不具有公开募捐资格的社会组织，前两年度每年用于公益慈善事业的支出占上年末净资产的比例均不得低于8%。计算该比例时，可以用前三年年末净资产平均数代替上年末净资产。  （四）具有公开募捐资格的社会组织，前两年度每年支出的管理费用占当年总支出的比例均不得高于10%。  不具有公开募捐资格的社会组织，前两年每年支出的管理费用占当年总支出的比例均不得高于12%。  （五）具有非营利组织免税资格，且免税资格在有效期内。  （六）前两年度未受到登记管理机关行政处罚（警告除外）。  （七）前两年度未被登记管理机关列入严重违法失信名单。  （八）社会组织评估等级为3A以上（含3A）且该评估结果在确认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时仍在有效期内。  公益慈善事业支出、管理费用和总收入的标准和范围，按照《民政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关于慈善组织开展慈善活动年度支出和管理费用的规定〉的通知》（民发〔2016〕189号）关于慈善活动支出、管理费用和上年总收入的有关规定执行。  按照《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新设立或新认定的慈善组织，在其取得非营利组织免税资格的当年，只需要符合本条第一项、第六项、第七项条件即可。  五、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确认按以下规定执行：  （一）在民政部登记注册的社会组织，由民政部结合社会组织公益活动情况和日常监督管理、评估等情况，对社会组织的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进行核实，提出初步意见。根据民政部初步意见，财政部、税务总局和民政部对照本公告相关规定，联合确定具有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社会组织名单，并发布公告。  （二）在省级和省级以下民政部门登记注册的社会组织，由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财政、税务、民政部门参照本条第一项规定执行。  （三）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确认对象包括：  1.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将于当年末到期的公益性社会组织；  2.已被取消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但又重新符合条件的社会组织；  3.登记设立后尚未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社会组织。  （四）每年年底前，省级以上财政、税务、民政部门按权限完成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确认和名单发布工作，并按本条第三项规定的不同审核对象，分别列示名单及其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起始时间。  六、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在全国范围内有效，有效期为三年。  本公告第五条第三项规定的第一种情形，其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自发布名单公告的次年1月1日起算。本公告第五条第三项规定的第二种和第三种情形，其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自发布公告的当年1月1日起算。  七、公益性社会组织存在以下情形之一的，应当取消其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  （一）未按本公告规定时间和要求向登记管理机关报送专项信息报告的；  （二）最近一个年度用于公益慈善事业的支出不符合本公告第四条第三项规定的；  （三）最近一个年度支出的管理费用不符合本公告第四条第四项规定的；  （四）非营利组织免税资格到期后超过六个月未重新获取免税资格的；  （五）受到登记管理机关行政处罚（警告除外）的；  （六）被登记管理机关列入严重违法失信名单的；  （七）社会组织评估等级低于3A或者无评估等级的。  八、公益性社会组织存在以下情形之一的，应当取消其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且取消资格的当年及之后三个年度内不得重新确认资格：  （一）违反规定接受捐赠的，包括附加对捐赠人构成利益回报的条件、以捐赠为名从事营利性活动、利用慈善捐赠宣传烟草制品或法律禁止宣传的产品和事项、接受不符合公益目的或违背社会公德的捐赠等情形；  （二）开展违反组织章程的活动，或者接受的捐赠款项用于组织章程规定用途之外的；  （三）在确定捐赠财产的用途和受益人时，指定特定受益人，且该受益人与捐赠人或公益性社会组织管理人员存在明显利益关系的。  九、公益性社会组织存在以下情形之一的，应当取消其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且不得重新确认资格：  （一）从事非法政治活动的；  （二）从事、资助危害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活动的。  十、对应当取消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公益性社会组织，由省级以上财政、税务、民政部门核实相关信息后，按权限及时向社会发布取消资格名单公告。自发布公告的次月起，相关公益性社会组织不再具有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  十一、公益性社会组织、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在接受捐赠时，应当按照行政管理级次分别使用由财政部或省、自治区、直辖市财政部门监（印）制的公益事业捐赠票据，并加盖本单位的印章。  企业或个人将符合条件的公益性捐赠支出进行税前扣除，应当留存相关票据备查。  十二、公益性社会组织登记成立时的注册资金捐赠人，在该公益性社会组织首次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当年进行所得税汇算清缴时，可按规定对其注册资金捐赠额进行税前扣除。  十三、除另有规定外，公益性社会组织、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在接受企业或个人捐赠时，按以下原则确认捐赠额：  （一）接受的货币性资产捐赠，以实际收到的金额确认捐赠额。  （二）接受的非货币性资产捐赠，以其公允价值确认捐赠额。捐赠方在向公益性社会组织、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时，应当提供注明捐赠非货币性资产公允价值的证明；不能提供证明的，接受捐赠方不得向其开具捐赠票据。  十四、为方便纳税主体查询，省级以上财政、税务、民政部门应当及时在官方网站上发布具备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公益性社会组织名单公告。  企业或个人可通过上述渠道查询社会组织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及有效期。  十五、本公告自2020年1月1日起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 民政部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8〕160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 民政部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问题的补充通知》（财税〔2010〕45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 民政部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确认审批有关调整事项的通知》（财税〔2015〕141号）同时废止。  尚未完成2019年度及以前年度社会组织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确认工作的，各级财政、税务、民政部门按照原政策规定执行。2020年度及以后年度的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的确认及管理按本公告规定执行。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民政部  2020年5月13日 |

1.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라 함은 성(省), 직할시, 자치구의 행정관할을 받지만 경제체제 또는 권리권한 면에서 (省), 직할시, 자치구와 동등하고 직접 중앙정부에 책임지는 도시를 가리키며 대련, 청도, 녕파, 하문, 심천 등 5개 도시가 있다. [↑](#footnote-ref-1)